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년 월 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년 월 일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이유

-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에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상하 60%(인구비례 4대1)에서 상하 50%(인구비례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음.
- 충청북도의 경우 옥천, 영동선거구는 금년 4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7,522명에 각각 4,461명, 4,626명이 부족하여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음.
-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에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 한계를 기존 상하 60%(인구비례 4대1)에서 상하50%(인구비례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옥천, 영동선거구는 금년 4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하한 기준인 27,522명에 각각 4,461명, 4,626명이 부족하여 현재 2개 지역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간 인구격차는 점점 커져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만 커져갈 것입니다. 농촌의 특성상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획정하여 생활환경,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 주민들을 통합하여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넓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지역의 면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어 인구편차 기준과 함께 탄력적으로 선거구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선거가 다가올 때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농어촌 거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둘째,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가 당리당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미리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